

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

의안 번호	20-51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 : 2020. 6. .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제출사유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함

2. 주요내용

- 설치년도 : 2020년
- 설치목적
 - 관내 생계형 거리가게 운영자에게 자립기회 마련 및 생존권 보장
 - 지원을 통한 거리가게 정비로 구민의 보행권 확보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거리 조성
- 재원조성
 - 일시도로점용료(도로법 제66조,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제8호에 따라 부과되는 점용료)
 - 적치물 및 노점에 부과되는 변상금(도로법 제72조,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제7호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)
 -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과태료(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, 제2호에 따른 과태료)
- 기금용도
 - 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철거 및 정비되거나 자진정비한 운영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
 - 거리가게 운영자 소양교육 및 전업을 위한 재취업 교육 지원비
 -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거리가게 시설 개보수비
 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3. 근 거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3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4. 첨부

- 2020년도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

2020년도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

○ 자금수지총괄

(단위 : 천원)

수입계획				지출계획			
항 목	'20년도 수입액	전년도 수입액	증감	항 목	'20년도 지출액	전년도 지출액	증감
합 계	136,510	-	136,510	합 계	136,510	-	136,510
전 입 금	-	-	-	비용자성사업비	44,345	-	44,345
보 조 금	-	-	-	용 자 성 사 업 비	60,000	-	60,000
차 입 금	-	-	-	인력운영비(구안건비)	-	-	-
용자금회수(이자포함)	-	-	-	기본경비(구물건비)	-	-	-
예탁금원금회수	-	-	-	예 탁 금	-	-	-
예 치 금 회 수	-	-	-	예 치 금	32,165	-	32,165
예 수 금	-	-	-	차입금원리금상환	-	-	-
이 자 수 입	-	-	-	예수금원리금상환	-	-	-
기 타 수 입	136,510	-	136,510	기 타 지 출	-	-	-

○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수 입 액	전년도수입액	증 감	비 고
합 계			136,510	-	136,510	
세외수입			136,510	-	136,510	
경상적 세외수입	사용료 수입	212-01 도로사용료	80,000	-	80,000	
임시적 세외수입	과징금 및 과태료 등	223-03 변상금	6,510	-	6,510	
		223-05 과태료	50,000	-	50,000	

○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지출액	전년도지출액	증감	비고
합계			136,510	-	136,510	
자립지원(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)			104,345	-	104,345	
거리가게 자립 지원기금 운용	일반운영비	201-01 사무관리비	1,120	-	1,120	1)심의위원회 참석수당
		201-03 행사운영비	225	-	225	1)소양교육 강사료
자립지원기금 용자 및 지원	일반보전금	301-12 가타 보상금	10,500	-	10,500	1)전업 교육비 지원
	민간자본 이전	402-01 민간자본사업 보조(자체재원)	32,500	-	32,500	1)시설 개보수비 지원
	용자금	501-02 통화금융기관 용자금	60,000	-	60,000	1)자립지원비 용자
재무활동			32,165	-	32,165	
보전지출	예치금	602-01 예치금	32,165	-	32,165	1)예치금